

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 조례 폐지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0. 11. 11
시민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11. 1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0. 11. 1.
- 다. 상정일자 : 제7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00. 11. 11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왕희 사회복지과장)

가. 제안이유

본 조례는 마포구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, 동 및 통·반장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'89.4.22일자로 조례 제81호로 제정·시행되었으나, 국민건강보험법(1999.2.8.법률 제5854호)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어 동사무소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근거가 상실되었고, 동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본 조례 존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-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구·동 및 통·반장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, 1989. 4. 22 조례 제81호로 제정·시행하였으나,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(1999. 2. 8 법률제 5854호)으로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 근거가 상실되어,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0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본 조례는 마포구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, 동 및 통·반장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'89.4.22일자로 조례 제81호로 제정·시행되었으나, 국민건강보험법(1999. 2. 8 법률 제5854호)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어 동사무소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근거가 상실되었고, 동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본 조례 존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함.

3. 근거법령

- 가. 1999. 2. 8 법률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 내지 제3조, 제6조 및 제7조
- 나.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(2000. 6. 23 대통령령 제16853호) 부칙 제1조 및 제2조
- 다.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(2000.6.30 보건복지부령 제157호) 부칙 제1조 및 제2조

4. 조례(안)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생략 :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 제2호 및 제4호
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(1999. 2. 8 법률 제5854호)
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삭제되어 지역의료보험지원 근거가 사라졌고,
총무13101-3896(2000. 9. 26)호 관련 동사무소 존치인력·사무의 확정안에
따라 동기능전환 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하기 위함.
- 나.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: 2000. 10. 27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